

내부참고용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사례집



이 사례집은 2019년 6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갑질 추진 방안」에 따라 각 기관의 갑질 사례를 수집하여 갑질의 판단과 관련하여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으로 갑질여부는 관련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내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집은 수집한 갑질 사례를 유형별로 일부 선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처분과 관련하여 타 사안과 병합되어 처분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I. 개요

- | | |
|-----------------|---|
| 1. 갑질 사례의 제작 목적 | 1 |
| 2. 갑질 판단 기준 | 1 |

II. 유형별 갑질 사례

- | | |
|--------------|----|
| 1. 법령 등 위반 | 3 |
| 2. 사적 이익 요구 | 7 |
| 3. 부당한 인사 | 10 |
| 4. 비인격적 대우 | 14 |
| 5. 기관 이기주의 | 18 |
| 6. 업무 불이익 | 20 |
| 7. 부당한 민원 응대 | 23 |
| 8. 기타 | 24 |

I

개 요

1. 갑질 사례의 제작 목적

-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수집하여 실제 갑질의 발생 현황 및 그에 따른 징계 정도를 등을 확인하고
-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갑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조직 내 갑질 예방 교육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

2. 갑질 판단 기준

-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판단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II

유형별 갑질 사례

1. 법령 등 위반

■ 판단기준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례1

기관장 A는 직원에게 전용 주차공간을 지정, 운영토록하고, 인격모독성 발언과 과도한 질책 및 비난을 하였으며, 물품 구입 시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지원에게 특정 물품을 선정토록 지시 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2월], 직원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2

교장 A는 학교 축제, 행사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교직원에게 강요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배우자가 학교 내 스크린 골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지시하고, 카드 결제한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서 상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지시함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요구]

▶▶▶[처분] [중징계](갑질행위 외 타 행위 포함)

사례3

실장A는 직원들을 상대로 A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무상황부를 미리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수당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前 기관장의 연대채무보증금 〇〇만원을 부담하게 한 후 이에 따른 개인 해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영양사로 하여금 급식용 쌀과 반찬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취득(횡령) 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및 [사적 이익 요구] 유형

▶▶▶[처분] 처분)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4

교수A는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총장 승인없이 수업일을 변경하고, 조교에게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담당교과목 시간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또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특정 학생을 비난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2월]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5

교장 A는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관련 없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토록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정된 학생수련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도록 강권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학교 공용물품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검식용 우유를 취식하는 등 공용물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강사 선정 시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부적절한 발언과 본인 복무처리의 부적정 처리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처분] [해임]

사례6

과장 A는 직원에게 성희롱(육체적 및 언어적 성희롱), 선물세트 요구, 복무위반(코로나19 비상근무 중 음주, 출장 중 근무지 이탈), 회계 집행 부적정(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직원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금품수수]

▶▶▶[처분] [해임]

사례7

행정실장 A는 소속직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 제한 요구, 대리 결재 지시, 신고 후 위협적인 전화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8

교장 A는 수업 중인 교사 등을 관사로 불러내어 음주를 권하였으며, 수학 여행 중 학생 취침지도 후 교사 등을 불러내어 음주를 권함 친목여행 및 회식 중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함

▶▶▶[유형]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해임]

사례9

행정실장 A는 용역계약 업무 부적정(입찰 공고 부적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흡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지속적 흡연을 하여 직원들의 불쾌감 유발 및 건강에 위해를 가함

▶▶▶[유형] [법령 등 위반]

▶▶▶[처분] [주의]

사례10

과장 A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A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 리포트 작성, 시험문제풀이를 하게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정직 1월] 부정 취득한 자격증 취소요청

2. 사적 이익 요구

■ 판단기준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사례1

영양사 A는 아침 조회시 조리종사원들을 약 1시간 동안 세워놓고 특정 조리사원에 대해 지적, 비난 등을 하고, 음식이 타거나 배식이 잘못되었다거나 검식용 음식을 조금 가지고 왔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이나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조리종사원에게 A의 자녀를 위해 점심식사를 차리도록 하고, A의 업무인 식자재 채고 검수, 급식일지 작성을 대신하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처분] 감봉 3월

사례2

원장 A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교무실 등에서 “니가 원장이야?”, “다들 그러고도 월급받아?”, “너 감점이야!” 라는 등 고함을 치고, 결재판을 내려치거나 서류를 집어던지고, 기간제교사를 상대로 A의 관사에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하였으며, 퇴근 이후 담당교사 등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나와 보고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담당교사 등이 야근을 하도록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및 [업무상 불이익] 유형

▶▶▶[처분] [처분] 감봉 3월, 기관장 등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3

팀장A는 같은 팀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을 상대로 A의 자녀 대입전형 조사, 가전제품 A/S 예약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징계위원회 회부

사례4

원장 A는 시설관리직에게 자택 천장수리 지시, 부당 인사 업무 처리 지시, 허위진술 등을 요구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기타]

▶▶▶[처분] [감봉2월]

사례5

부서장A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가에서 휴식 중이던 부서원에게 “술을 마셨는데 태우러 오라”고 하여 A의 차를 대리운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근신 7일

사례6

과장 A는 업무지시에 대해 직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박지르고, 업무지시를 이유로 고성을 지르거나 사소한 일에도 질책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에게 A가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대한 대리 서명을 지시하였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단체와의 저녁식사에 참석하라거나 보건휴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및 [기타] 유형

▶▶▶[처분] 정직 1월, 피해자들과의 격리조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시행

사례7

교사 A는 기간제교사에게 근무시간에 본인 자녀의 간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본인 동의없이 팀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로 위임하고 출근길에 간식거리(빵,우유, 라면 등)을 사오도록 근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반복적으로 요구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및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3월

사례8

팀장A는 하급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인격비하 발언 등을 하였고, 공과금 대납, 개인물품 구매 대행, 온라인교육 대리수강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지시하였으며 업무시간 외에 저녁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불러 내어 성희롱 발언을 하고 휴일에도 연락하여 폭언을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사적 이익 요구] 및 [기타]

▶▶▶[처분] 파면,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9

교장 A는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였으며, 독점적으로 교내 과실수 열매를 취득함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처분] [주의]

사례10

원장A는 간식을 원장실에 가져오게 하여 취식하였고, 육아휴직 사용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있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정직 1월]

3. 부당한 인사

■ 판단기준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사례1

주임A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서 해당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공식화하려 하고, 다른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부정적인 언행을 보였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A의 사적인 외부 강의를 위한 시험지 채점 및 논문 작성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및 [사적 이익 요구] 유형

▶▶▶[처분] 정직 3월, 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2

과장A는 무직 근로자 B에게 병가를 낸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기간제 근로자 C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연가를 불승인 하였고, 근로자 D에게 계약과 달리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욕설, 인격모독, 강압적 행동을 수시로 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및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사례3

기관장A는 직원을 상대로 업무 미흡 등의 사유로 심한 질책과 폭력을 행사하고, A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직원을 기피 부서로 발령을 냈으며, 담당직원을 상대로 특정업체, 특정공법 또는 특정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지시가 미이행 되자 폭언 등을 반복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및 [법령 등 위반]

▶▶▶[처분] 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4

부서장A는 직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하고, 사무실에서 화가나면 큰소리를 내거나, 책상을 쿵쿵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다른 팀에 파견 중인 직원이 부서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단체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른 부서로 보낸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시급하지 않은 업무를 업무 시간 외에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

▶▶▶[처분] 감봉 1월, 내부 업무망 게시판에 사례 전파

사례 5

기관장 A는 담당직원에게 A가 발령받기 전에 완료된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특정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하향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음

▶▶▶[유형] [부당한 인사]

▶▶▶[처분] 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사례 6

부서장 A는 직원을 상대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방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인사와 관련한 발언을 수시로 하고, 사소한 이유로 사유서, 각오의 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직원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였으며, 연가 사용 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음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및 [기타]

▶▶▶[처분] 견책

사례 7

팀장 A는 특정 하급자의 근무평정을 고려하여 전보 내신 의사가 없는 다른 하급자에게 전보내신을 강요함

▶▶▶[유형] [부당한 인사]

▶▶▶[처분] [견책]

사례 8

원장 A는 평정 확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면평가자가 평가 서열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과 S등급이나 포상을 받은 교원들에게 간식제공을 요구하고, 직원에게 성적 묘사와 젊은 남자가 커피 타줘서 맛있다'라고 하여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처분] [경징계]

사례 9

교감 A는 ○○계획 관련 가산점 대상자 명단에 본인이 포함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본인 고유의 업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전가함 또한 본인의 택배물품이 배달된 사실을 늦게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법령 등 위반]

▶▶▶[처분] [경고]

사례10

교감 A는 정기전보 인사와 관련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전보내신서 작성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 발언을 함 회식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남녀 서로 술을 따르게 함

▶▶▶[유형] [부당한 인사], [법령등위반]

▶▶▶[처분] [경고]

4. 비인격적 대우

■ 판단기준

-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 여부

사례1

실장 A는 A가 교육중인 전공의들을 상대로 “너는 평생 지방대 출신이다”라고 하고, 평소에도 공의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 성적 언동을 반복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3월, 직원 상대 사례 전파 및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 2

직원 A는 청사관리원을 상대로 청사 출입일지를 집어 던져 커피가 쏟아져서 청사관리원 옷에 얼룩이 발생하게 하는 등 민원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과 폭력 행위를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징계절차 진행 중(징계위원회 경징계 요구)

사례 3

과장A는 회의중 직원 B에게 “당신처럼 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일 못하면 눈치라도 있지.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당신하고 일 못하니깐 다른 곳으로 꺼져라”라고 하고, 직원 C에게 “너는 손가락이 없어서 전화를 못하냐? 병신 같은 놈.”, “왜 안 나가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며 C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야기 해, 그건 됐고”라고 무시를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해임

사례 4

원감 A는 B직원을 전직원 전체회의(협의회) 중 또는 다른 직원 앞에서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B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 경력 등에 대한 지적,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타 직원에게 B직원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고]

사례5

과장A는 직원을 상대로 퇴근 시간 이후 및 주말에 수시로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 시 “잔머리 굴리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고 하거나,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음

▶▶▶[유형] 업무상 불이익 및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월

사례6

기관장A는 직원을 상대로 회식중 “쓸모도 없는 네가 왜 여기 있는데..”라고 하고,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어깨 등을 두세 차례 만지는 등 신체 일부를 불필요하게 접촉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경징계, A에게 갑질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사례7

교사 A는 교육실무사에게 환경미화와 관련하여 본인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시한 일을 못하고 있으면 재촉하며 인격 비하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중징계(다른 징계사유와 함께 처분)

사례8

행정실장 A는 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상신한 문서를 결재해주지 않거나 결재를 지연하고, 직원의 공가 결재 및 관외 전보내신 등과 관련된 문서를 고의적으로 결재하지 않고, 교장 명령에 불응 행정실 직원들에게 근무 중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 유튜브에 ‘좋아요’를 누르도록 이야기하고 개인 구매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함.특정직원에 대하여 ‘절도를 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그 직원이 교장과 친인척 관계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월(타사안 병합)]

사례9

영양사 A는 조리사와 조리원에게 급식실 운영과 위생교육을 이유로 잦은 고성 등 과잉 감정 표출과 인격모독 등의 장기간 지속적인 언어폭력, 기물 파손으로 급식실 내 불안감을 조성하여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1월]

사례10

장학사 A는 본인업무를 하급자에게 전가한 후 결과물을 본인 명의로 기안문 작성하여 결재받고, 반복적으로 하급자를 퇴근 못하게 하고, 여러사람에게 큰 소리로 욕박지름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견책]

5. 기관 이기주의

■ 판단기준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사례1

팀장 A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워크숍 개최 비용을 사업수행 주관기관에 전가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견책, 가해자 인사조치, 피해자 사후 관리 실시

사례 2

부장 A는 소속직원에게 기획공연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최소 4매 이상의 티켓 판매를 하도록 요구하는 메일을 송부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구두경고

사례 3

팀장 A는 회사의 협업공간을 구축하면서 상주인력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들을 상대로 협약상 근거 없이 수행기관의 직원들을 주 1회 협업공간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견책]

사례 4

과장 A는 용역업체에 용역과 관련 없는 벽걸이형 TV 설치 장비구매, 용역 보고회 기념품 준비하게 하고, 사무실 이전 시 칸막이 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용역업체 파견직원에게 택배 심부름, 집기류 이동 등 과업범위 외 업무를 지시하였음

▶▶▶[유형] [기관 이기주의]

▶▶▶[처분] [경징계] 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6. 업무 불이익

■ 판단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사례1

계장 A는 업무분장 시 당초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특정직원 1명에게 편 중시키고, 회식중 직원의 발언이 맘에 안 든다고 해당 직원의 뺨을 때렸으며, 평상시에도 업무 외의 사유로 직원들에게 핀잔 등 폭언을 하였음

▶▶▶[유형] [업무 불이익] 및 [비인격적 대우]

▶▶▶[처분] [감봉 3월]

사례2

팀장A는 팀원을 상대로 휴가기간 및 퇴근시간 이후에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회식을 통보하며 팀원들을 참석하게 하였음

▶▶▶[유형] [업무상 불이익]

▶▶▶[처분] 훈계, 갑질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조치(전보)

사례3

소장A는 직원을 상대로 A 자녀의 등·하교, A의 개인적 병원방문을 위한 운전을 시키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지시하고, 특정직원의 잘못에 대해 부서 전체나 직급 전체를 불러 질책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 인격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잦은 업무분장 변경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직원의 업무상 필수교육 신청을 제한하였음

▶▶▶[유형]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및 [업무상 불이익]

▶▶▶[처분] 징계위원회 회부(징계절차 중)

사례4

교장A는 교육감 표창 추천대상자인 교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개인적 감정으로 표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행함

▶▶▶[유형] [업무 불이익]

▶▶▶[처분] [경고]

사례5

교사 A는 배 교사에게 여러 직원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한 행동을 하고 사전 협의 없이 주말에 학교행사에 참여시킴

▶▶▶[유형]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처분] [행정처분]

사례6

교장 A는 업무시간 중 교직원에게 운동을 강요하고 퇴근 중인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로 오도록 압박하고, 회의운동을 이유로 교사의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함 교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출 강요교직원에게 폭언·모욕, 비난 등 인격 모독 발언, 성희롱 및 외모 평가 발언, 차별적 발언 등

▶▶▶[유형] [업무 불이익],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처분] [중징계]

사례8

교장A는 친목 도모를 위한 교직원 워크숍에 사비 요구 및 강제 참여를 명령하고 다수의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고성, 교권 침해 등) 및 특정 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평소 평교사 및 부장교사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하대하고, 교사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교사가 식사비를 결제하게 함

▶▶▶[유형] [기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처분] [주의]

사례8

과장 A는 직원을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당직자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요구하고, 원에게 업무미흡 등을 이유로 1시간 가량 질책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들을 상대로 업무시간 외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를 수차례 하였음

▶▶▶[유형] [업무 불이익],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처분] [정직 3월] 인사 조치

7. 부당한 민원 응대

■ 판단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사례1

팀장 A는 금품을 초과지급 받은 고객이 당일 과지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음에도 과지급금 회수처리에 관한 결정을 미루어 고객으로 하여금 재방문하게 하였음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처분] [주의] 초과지급금 처리 시 금전사고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고객불만 최소화 방안 마련

8. 기타

■ 판단기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사례1

교수 A는 학생들을 상대로 단체SNS를 이용하여 학생들 편 가르기를 하고 교수와 학생 간 호칭을 아버지와 아들(딸)로 호칭하도록 하였음

▶▶▶[유형] [기타]

▶▶▶[처분] 감봉 3월, 교직원 대상 교육사례로 활용

사례2

팀장A는 직원을 상대로 결재중 업무가 미숙하다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초과근무 결재를 상신하지 못하게 하거나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았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및 [기타] 유형

▶▶▶[처분] 감봉

사례3

팀장 A는 직원들과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특정직원이 단체알림방에 출근 시 **IC에서 탑승하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직원에게 **IC 경유 하지 말라고 하였음

▶▶▶[유형] [기타]

▶▶▶[처분] 주의, 정기감사시 갑질행위 점검 의무화

사례4

교장A는 단체티 구입, 농구부 유니폼 구매, 교재·교구선정, 현장체험 학습활동 지역 선정 등의 결정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함

▶▶▶[유형] [기타]

▶▶▶[처분] [경징계]

사례5

사립학교 이사장A 및 교장B는 관리자의 권한을 남용해 수시로 교원들의 인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노래방 참석을 묵시적으로 강요함

▶▶▶[유형] [기타]

▶▶▶[처분] [중징계]

사례 6

사립학교 이사장 A는 학생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도자기를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교원들의 인력을 부당하게 동원함

▶▶▶[유형] [기타], [사적이익 요구]

▶▶▶[처분] [경고]

사례 7

부서장A는 소속 부서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결재과정에서 20~30분간 세워 놓고 지적을 하거나, 과다하게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가함

▶▶▶[유형] [기타]

▶▶▶[처분] [감봉 6월] 전보조치

사례 8

교장 A는 교사에게 민원취하 요구를 하여 자율성이 보장된 행위 제한을 강요

▶▶▶[유형] [기타]

▶▶▶[처분] [경고]

사례9

교장 A는 교사 간 다툼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 모든 교사들에게 공개 사과 하게 하였으며, 경위서 작성 요구 및 교사 비정기전보 신청을 목적으로 학교장 경고를 여러 차례 과도하게 처분함 또한, 교장 본인은 근무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음

▶▶▶[유형] [법령 등 위반], [기타]

▶▶▶[처분] [정직 3월]

사례10

부서장 A는 여직원을 상대로 회식중 함께 춤(일명 부르스)을 같이 추자고 하거나, 남직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후 그 대금을 부담하게 하였음

▶▶▶[유형] [비인격적 대우], [기타]

▶▶▶[처분] [감봉 1월] 인사발령